

#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

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함

## I. 추진근거

- ☐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, 제5조의2, 제14조
- 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8조
- ☐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(고용노동부, '21.1월) 등

## II. 사업개요

- ☐ 사회적기업 현황

(’20.12월말 기준)

| 구 분  | 계   | 인 증 | 예 비 |
|------|-----|-----|-----|
| 기업 수 | 896 | 465 | 431 |

- ☐ 주요사업

### ○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

- 지원대상 :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- 지원내용
  - ▶ 일반인력 : 인건비(최저임금 수준) + 사회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 일부 지원
  - ▶ 전문인력 : 인건비(월 최대 200~250만원) 지원 ※ 자부담(10~50%)

### ○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

- 지원대상 :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- 지원내용 : 연 1억원(인증), 연 5천만원(예비) 한도 ※ 자부담(10~30%)
  - ▶ 브랜드·로고 개발, 시제품 제작,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, 기술개발(R&D),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, 사업모델 발굴, 시장 수요조사 등

○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

- 지원대상 : 인증사회적기업
- 지원내용 :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(10.075%) 지원
  - ▶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(기업 당 최대 5인, 1인당 월 183,590원 한도)

○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

- 지원대상 :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, 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재정지원
- 지원내용 : 자치구 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

□ 사업예산 : 18,739백만원 (국비 13,865백만원, 시비 4,874백만원)

### Ⅲ. '21년 추진계획

-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
-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적극 지원
-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

□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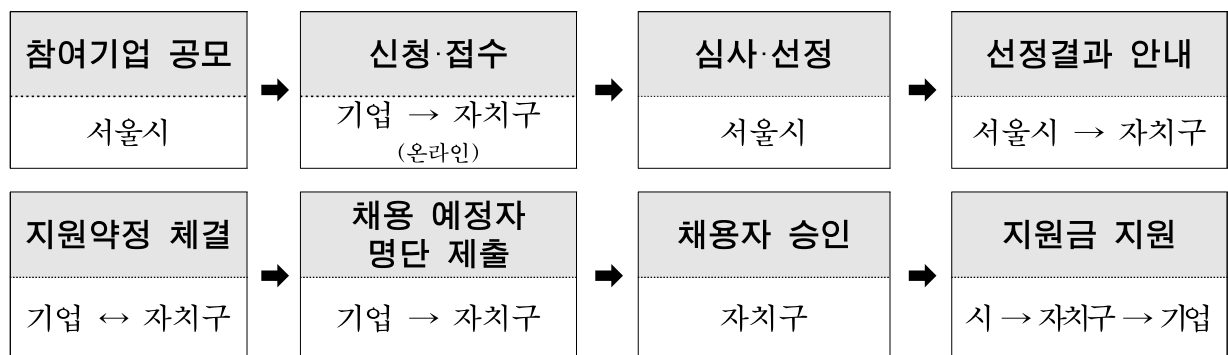
일반인력 지원

- 지원대상 :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- 지원내용 : (예비)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일부
- 지원기준 : 1인 당 2,006,070원/월
  -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(1,822,480원)+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(183,590원)
- 지원비율 :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

| 구 분     | '18년 이전 인·지정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9년 이후 인·지정 기업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예비사회적기업 | 1년차 70%, 2년차 60%<br>(취약계층 근로자는 20% 추가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~2년차 각 50%<br>(취약계층 근로자는 20% 추가) |
| 인증사회적기업 |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<br>(취약계층, 만 2년 이상 계속고용근로자는 각 20% 추가지원) | 1~3년차 각 40%<br>(취약계층 근로자는 20% 추가) |

- **지원기간** : 1년 (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)
  - 최대지원 기간은 2년(예비사회적기업), 3년(인증사회적기업)
- **소요예산** : 12,922백만원 (국비 9,691백만원, 시비 3,231백만원)
  - 부담비율 : 국비 75%, 시비 25%
- **추진일정**
  -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: 2021년 2월 중(예정)
  -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
    - ▶ 상반기 재심사 공고 : 2021년 5월 중(예정)
    - ▶ 하반기 재심사 공고 : 2021년 8월 중(예정)

#### ○ 지원절차



#### 전문인력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- **지원내용** :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
- **지원기준** : 월 최대 200만원(또는 250만원) ※ 통상임금 기준
  - 최대 200만원 : 각 전문분야별 3년 이상 근무자, 기사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근무자, 각 전문분야별 석사학위 소지자
  - 최대 250만원 : 각 전문분야별 5년 이상 근무자, 변호사·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, 각 전문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
- **지원비율** :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

- ▶ 인증 : 1년차 80%, 2년차 70%, 3년차 50%
- ▶ 예비 : 1년차 90%, 2년차 80%

- **지원기간** : 1년 (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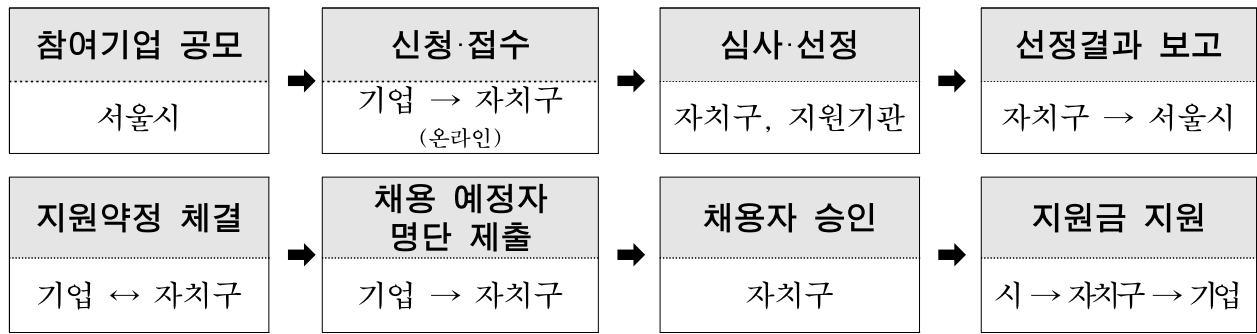
- 최대지원 기간은 2년(예비사회적기업), 3년(인증사회적기업)

○ 소요예산 : 일반인력 지원예산 활용

○ 추진일정

- 신규 참여기업 모집공고 : 2021년 3월 중(예정)

○ 지원절차



□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

○ 지원대상 :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
○ 지원내용 : 사회적기업의 지속적·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개발비

- 브랜드·로고 개발, 시제품 제작,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, 기술개발(R&D),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, 사업모델 발굴, 시장 수요조사 등

○ 지원기준 :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, 예비사회적기업 등 5천만원 한도

○ 지원비율 :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

- 1회차 90% → 2회차 80% → 3회차 이상 70%

○ 지원기간 : 1년

- 최대지원 기간은 2년(예비사회적기업 등), 3년(인증사회적기업)

- 최대 지원금액 : 기업 당 3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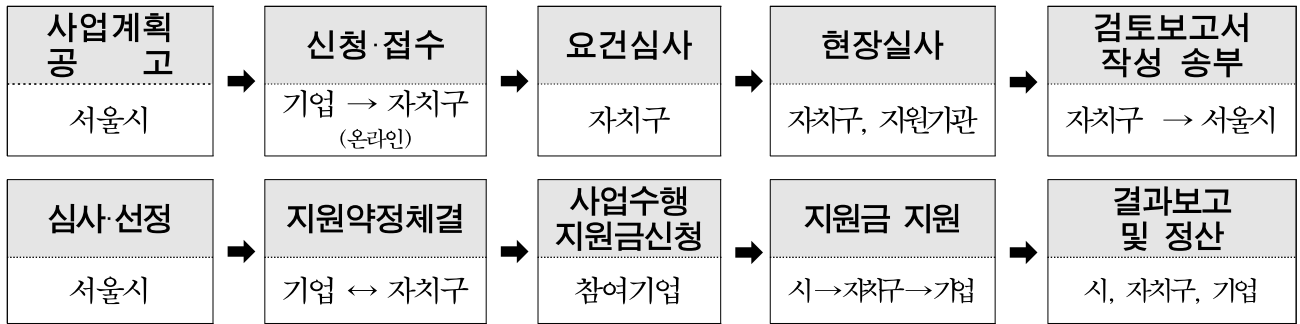
○ 소요예산 : 3,113백만원 (국비 2,179백만원, 시비 934백만원)

- 부담비율 : 국비 70%, 시비 30%

○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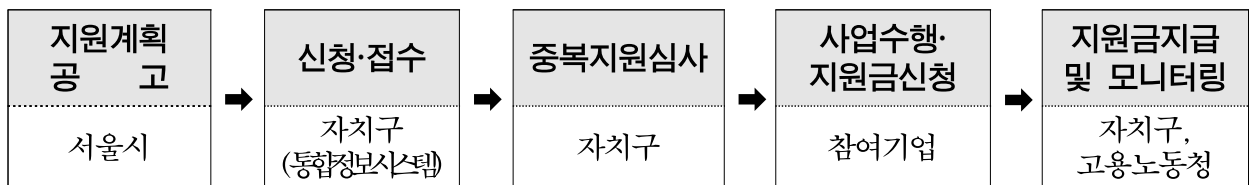
- 참여기업 모집 공고 : 2021년 2월 중(예정)

○ 지원절차



#### 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

- 지원대상 : 인증사회적기업
- 지원내용 : 4대 사회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 일부
- 지원기준 : 1인당 월 183,590원 한도
- 지원비율 :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(1,822,480원)의 10.075%  
- 고용보험 1.05%, 산재보험 0.73%, 건강보험 3.825%, 국민연금 4.5%
- 지원기간 : 1년 (최대 4년) ※ 최대 지원기간은 연속 기준
- 소요예산 : 2,058백만원(국비 1,543백만원, 시비 515백만원)  
- 부담비율 : 국비 75%, 시비 25%
- 추진일정  
-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: 2021년 4월 중(예정)
- 추진절차



#### ☐ 지역특화 지원 사업

- 지원대상 : 지역특성이 반영된 (예비)사회적 기업 육성·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자치구
- 지원내용 : 지역특성이 반영된 (예비)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(예비)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비용
- 지원기준 : 자치구별 최대 4천만원 이내
- 지원비율 : 자치구별 차등 적용

- 지원기관 심사·선정 시 '20년 자치구 전체 재정집행 실적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반영 ※ 예산담당관 요청사항 : 예산담당관-396호(2020.1.1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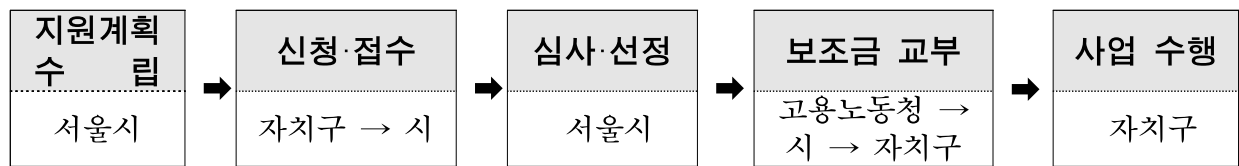
○ 지원기간 : 1년

○ 소요예산 : 646백만원 (국비 452백만원, 시비 194백만원)

- 부담비율 : 국비 70%, 시비 30%

○ 추진일정

- 참여기업 모집 공고 : 2021년 3월 중(예정)



#### □ (예비)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실시

○ 정기점검 : 자치구에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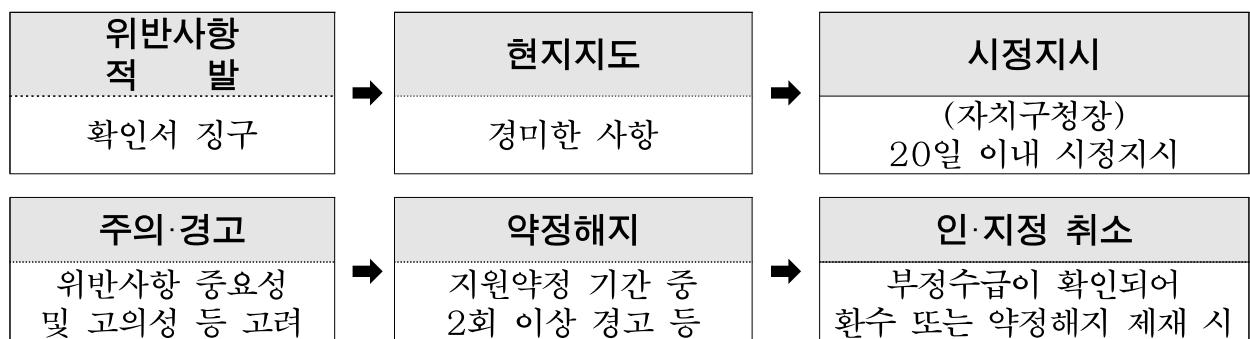
- 1분기, 3분기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25% 이상
- 점검내용 : 부정수급 빈도가 높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사항 (실제 근무여부 등) 중심

○ 특별점검 : 부정수급 제보 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

○ 합동점검 : 서울시, 자치구,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합동점검(2, 4분기)

- 점검시기 : 상반기('21년 5~6월), 하반기('21년 10~11월)
- 점검내용 : 재정지원 사업 전반(인·지정 요건, 참여근로자 노무관리, 지원 약정 이행 여부, 회계처리 적정성 등)

○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및 절차



- 부정수급 적발 시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 약정 해지 및 영구배제